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서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지역서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 서점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특성화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사.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 지역서점의 역할·현황, 홍보,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 mpfive7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가. 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 ② "특성화서점"이란 인문도서, 고서, 여행서적 등 특정한 분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지역서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지역서점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역서점 창업예정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성화서점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특성화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인천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6.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시 도서관업무담당 부서장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서점업무 담당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구·군,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홍보)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 현황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2조(조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카. (생략)

타. 중소기업의 육성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다. (생략)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별첨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6조(지역서점의 지원사업)

-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경영개선, 마케팅지원, 컨설팅 지원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인천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중복되어 추계에서 제외함

※ 예산 : ✓햇살론 사업(2,244백만원), ✓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 : 130백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지원(1100백만원)
✓소상공인 홀로서기 창업금융 지원(200백만원)

※ 관련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천 남부, 북부),
소기업소상공인협회 등

○ 제7조(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

-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1억미만임

○ 제10조(수당과 여비)

- 지역서점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서 1억원 미만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김재익